|  |  |  |
| --- | --- | --- |
|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를 공포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엔(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조**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환경보호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사업단위가 사회에 환경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하며, 일반대중이 환경보호 감독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 행정구역내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제3조** 기업·사업단위는 의무 공개와 자발적 공개를 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기에 맞게 사실대로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관한 건실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부문의 행정경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건을 갖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자사의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건실한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환경정보 공개 관련 일상업무를 수행할 담당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가 공개한 환경정보와 정부부문이 보유한 환경감독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사업단위 환경관련 행위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6조**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가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 구(區)가 설치된 시(市) 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행정구역 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정부 웹사이트,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이 접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작성할 때, 관할 행정구역의 환경오염 수용능력, 중점 오염물배출총량 통제지표를 고려하고, 또한 기업·사업단위가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가 설치된 시 및 그보다 상급 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감시감독대상 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2) 시험·분석·검측 기능을 가진 화학·의약·생물분야 성급(省級) 중점 실험실, 2급 이상 병원, 오염물 집중처리업체 등 오염물 배출 행위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목받거나 또는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경우  (3) 3년 이내에 비교적 큰 환경사건을 일으켰거나 환경오염 문제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4) 기타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 있는 경우  **제9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아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기초 정보 - 업체 명, 조직기구코드, 법정대표자, 생산지 주소, 연락처, 생산경영 및 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 제품 및 규모 포함  (2) 오염물 배출 정보 - 주요 오염물 및 특징적인 오염물의 명칭, 배출 방식, 배출구 수량 및 분포 상황, 배출 농도 및 배출 총량, 기준 초과 현황, 적용중인 오염물 배출 표준, 기 결정된 배출 총량  (3) 오염 방지시설 건설 현황 및 운영 상황  (4)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환경보호 행정허가 상황  (5) 돌발 환경사건 발생 시 응급 대응 방안  (6) 기타 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  국가 중점감독통제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이밖에도 자체적인 환경 감시감측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자사 웹사이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또는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아래 방식 중 하나 또는 다수의 방식을 채택해 공개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정보제공 전문간행물  (2)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  (3) 정보공개서비스·감독 콜센터  (4) 자사의 자료검색처, 정보공개란, 정보가판대, 디스플레이광고, 터치패드광고 등 장소 또는 시설  (5) 기타 일반대중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식  **제11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발표한 후 90일 이내에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정보 생성·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2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이외의 기업·사업단위도 본 방법 제9조, 10조, 11조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 장려대상 기업·사업단위는 자발적으로 생태보호, 오염방지, 환경관련 사회책임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환경정보 공개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다. 검사대상 업체는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일반대중들이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도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중점 오염물배출업체가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신고인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했더라도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공개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허위와 조작이 포함된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环境保护部令第31号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条**　为维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享有获取环境信息的权利，促进企业事业单位如实向社会公开环境信息，推动公众参与和监督环境保护，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等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环境保护部负责指导、监督全国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工作。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指导、监督本行政区域内的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工作。  **第三条**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强制公开和自愿公开相结合的原则，及时、如实地公开其环境信息。  **第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指导、监督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工作制度。环境保护主管部门开展指导、监督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工作所需经费，应当列入本部门的行政经费预算。  　　有条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建设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平台。  　　企业事业单位应当建立健全本单位环境信息公开制度，指定机构负责本单位环境信息公开日常工作。  **第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企业事业单位公开的环境信息及政府部门环境监管信息，建立企业事业单位环境行为信用评价制度。  **第六条**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依法可以不公开；法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七条**　设区的市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于每年3月底前确定本行政区域内重点排污单位名录，并通过政府网站、报刊、广播、电视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布。  　　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重点排污单位名录时，应当综合考虑本行政区域的环境容量、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要求，以及企业事业单位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等因素。  **第八条**　具备下列条件之一的企业事业单位，应当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  　　（一）被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为重点监控企业的；  　　（二）具有试验、分析、检测等功能的化学、医药、生物类省级重点以上实验室、二级以上医院、污染物集中处置单位等污染物排放行为引起社会广泛关注的或者可能对环境敏感区造成较大影响的；  　　（三）三年内发生较大以上突发环境事件或者因环境污染问题造成重大社会影响的；  　　（四）其他有必要列入的情形。  **第九条**　重点排污单位应当公开下列信息：  　　（一）基础信息，包括单位名称、组织机构代码、法定代表人、生产地址、联系方式，以及生产经营和管理服务的主要内容、产品及规模；  　　（二）排污信息，包括主要污染物及特征污染物的名称、排放方式、排放口数量和分布情况、排放浓度和总量、超标情况，以及执行的污染物排放标准、核定的排放总量；  　　（三）防治污染设施的建设和运行情况；  　　（四）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及其他环境保护行政许可情况；  　　（五）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  　　（六）其他应当公开的环境信息。  　　列入国家重点监控企业名单的重点排污单位还应当公开其环境自行监测方案。  **第十条**　重点排污单位应当通过其网站、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平台或者当地报刊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开环境信息，同时可以采取以下一种或者几种方式予以公开：  　　（一）公告或者公开发行的信息专刊；  （二）广播、电视等新闻媒体；  （三）信息公开服务、监督热线电话；  （四）本单位的资料索取点、信息公开栏、信息亭、电子屏幕、电子触摸屏等场所或者设施；  　　（五）其他便于公众及时、准确获得信息的方式。  **第十一条**　重点排污单位应当在环境保护主管部门公布重点排污单位名录后九十日内公开本办法第九条规定的环境信息；环境信息有新生成或者发生变更情形的，重点排污单位应当自环境信息生成或者变更之日起三十日内予以公开。法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二条**　重点排污单位之外的企业事业单位可以参照本办法第九条、第十条和第十一条的规定公开其环境信息。  **第十三条**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自愿公开有利于保护生态、防治污染、履行社会环境责任的相关信息。  **第十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有权对重点排污单位环境信息公开活动进行监督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  **第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宣传和引导公众监督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工作。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重点排污单位未依法公开环境信息的，有权向环境保护主管部门举报。接受举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第十六条**　重点排污单位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责令公开，处三万元以下罚款，并予以公告：  　　（一）不公开或者不按照本办法第九条规定的内容公开环境信息的；  　　（二）不按照本办法第十条规定的方式公开环境信息的；  　　（三）不按照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时限公开环境信息的；  　　（四）公开内容不真实、弄虚作假的。  　　法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七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2015年1月1日起施行。 |